

#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##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오장세의원 외 5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04년 2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04년 2월 16일

3. 제안 이유

- 2004년 1월 16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(제7060호)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(제7061호)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법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과 우리도의 논리를 개발하여 지역혁신 발전계획 및 지방분권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시키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 : 8명 정도
- 존 속 기 간 : 의결 일로부터 효력 종료 시까지
- 위 원 선 임 :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

## 5. 검토의견

-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(안)을 검토한 바
- 본 결의안은 2004년 1월 16일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우리도의 방향정립과 논리를 개발 반영시키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
- 집행부에서 별도의 도정혁신기획단을 구성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도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